

<9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2024년

제31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①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입소자와 보호자는 입소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② **계약목적** : “다사랑실버타운”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인 일부 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의료시설 입소 비용을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월 이용료**

요양원 입소비용 (30일 기준)		본인부담금(20%)	본인부담금(12%)	본인부담금(8%)
분류	금액(원)			
장기요양 1등급	2,527,200	505,440	303,260	202,170
장기요양 2등급	2,344,500	468,900	281,340	187,560
장기요양 3,4,5등급	2,214,000	442,800	265,680	177,120
측탁의 비용	월2회기준	5,040	3,020	2,020
식비,간식	210,000	210,000		

가)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하는 변경되는수가에 따라 본인부담이 변경된다

나) 매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변경 내용은 별첨으로 첨부 한다

3.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가) 식사재료비 : 1일(1식) 2,000원/ 간식 1일(2식) 1,000원

나) 아·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 : 비용은 입소자가 별도 부담한다.

다) 상급침실 이용료는 5,000원 ~ 10,000으로 한다

라)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4.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 1일 공단비용으로 이용료를 산정한다

가) 입소비용 : 불임자료 2의 1부 첨부한다

④ 계약해제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2.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퇴소 처리한다.
 - 가)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나)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다)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 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입소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4.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32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1.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4.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4.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